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3. 18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3. 1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3. 3. 11
- 라. 상정일자 : 2003. 3. 18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세무과장 최진각)

가. 개정이유

- 자동차세의 감면분 추징에 있어 사실입증이 어려워 납세자와 마찰이 우려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감면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관련 조문을 개정함.

나. 주요골자

- 자동차세 면제차량 추징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가 보철용 또는 생업용활용의 입증이 어려워 자동차세 추징 단서 규정을 삭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7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있던 것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24조의1).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3년 연장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의 자동차세 감면사항은 민원인과의 마찰이 잦았던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서 입증이 어려웠던 단서규정을 삭제하므로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조례안 제7조의 노인복지시설 감면규정은 세무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유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전부 적용하고
 - 조례안 제24조1의 감면기간 연장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 또는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사항이며

- 기타 조례안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9조 등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감면 범위의 확대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
|-------|------------|
| 의안번호 | 제 44 호 |
| 의 결 | 2003. 3. . |
| 년 월 일 | (제 회) |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 제출년월일 | 2003. 3. / / |

서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44호 |
|----------|-------|

제출년월일 : 2003. 3. /

제 출 자 : 서산시장

1. 개정이유

- 감면분 추징에 있어 사실입증이 어려워 납세자와 마찰이 우려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 타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감면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관련 조문을 개정함.

2. 주요골자

- 자동차세 면제차량 추징 조항 삭제. (안 제2조제2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가 보철용 또는 생업용활용의 입증이 어려워 자동차세 추징 단서 규정을 삭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안 제7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있던 것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안 제24조의1)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3년 연장

3. 참고사항

- 충청남도 세정13400-2209 (2002. 12. 27)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시·군세조례개정내용 송부
- 입법예고 결과 (2003. 1. 11 - 1. 31) : 제출 의견 없음

조례 제 호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4조의1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노인복지시설 -----
----- 노인복지시설 -----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
② -----
-----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

-----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

② ~ ③ (현행과 같음)

